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2021. 3.



교무처 입학관리팀

본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광주교육대학교 입시안내 홈페이지(<http://entrance.gnue.ac.kr>)를 통해 공고합니다.

I

모집인원

1.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 시기	전형명	모집인원(명)			비고
		정원 내	정원 외	계	
수시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81	-	81	*성비 적용
	학생부종합(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50	-	50	
	학생부종합(광주인재전형)	40	-	40	
	학생부종합(전남인재전형)	40	-	40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5	-	5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3	-	3	-
	학생부종합(장애인대상자전형)	-	10	10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10	10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	7	7	
	소 계	219	27	246	-
정시 (나군)	수능위주(일반전형)	108	-	108	*성비 적용
	소 계	108	-	108	-
총 계		327	27	354	-

※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일반전형)은 남·여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1단계 및 2단계 모두 적용함

(성비적용 중 어느 한 성이 부족할 시에는 성비를 적용하지 않음)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 나군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II 수시모집

1.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전라남도교육감 추천전형)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이 전형 입학생에게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전라남도 초등학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임용 후 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함
학생부종합 (광주인재전형)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종합 (전남인재전형)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다만,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학생부종합 (장애인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형명	지원자격
<p>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p>	<p>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아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전과정(6년)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023학년도 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u>본인·부모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u>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12년)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023학년도 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u>본인이 해당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 부모·학생의 거주지가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행정구역(읍·면)의 적용은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洞)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검정고시 합격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제외 ※ 부모 특이자(사망·이혼·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의 부모)는 아래 부모 특이자 적용기준을 따름 </div>
<p>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p>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 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모 특이자 적용 기준	
부모의 사망·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양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부모의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법률상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입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장기 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금지산선고,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친권 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 상실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명		1단계 (1,000점)	선발 비율	2단계 (1,000점)	선발 비율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서류평가 100% (1,000점)	400%	1단계 점수 70% (700점) + 면접 30% (300점)	100%
지역 인재	학생부종합(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200%		
	학생부종합(광주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남인재전형)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300%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정성적·맥락적으로 종합평가함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 기준

전형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응시 제한 없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학생부종합(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학생부종합(광주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남인재전형)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전형)	

Ⅲ 정시모집

1.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수능위주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 * 반영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영역별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 제한 없음)

2.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명	반영비율(반영총점)	선발비율	비고
수능위주 (일반전형)	수능 100%(1,000점)	100%	수능 백분위 및 등급 활용

※ 백분위 반영 영역: 국어, 수학, 탐구(2과목)

※ 등급 반영 영역: 영어(등급별 반영점수), 한국사(등급별 가산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별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제한 및 가산점 없음
나. 영역별 반영 방법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합계
반영방법	백분위	백분위	등급 (등급별 반영점수)	백분위	등급 (등급별 가산점)	-
배 점	250점	250점	250점	250점	-	1,000점
비 율	25%	25%	25%	25%	-	100%
산출공식	$(\frac{\text{국어, 수학, 탐구 영역 백분위 합}}{300}) \times 750 + \text{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 \text{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 한국사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1,000점)를 초과할 수 있음

<영어 등급별 반영점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250점	240점	230점	220점	210점	200점	190점	180점	170점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산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 수시 정원외 미선발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

전형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응시기준
정원내	수능위주 (일반전형)	없음	모든 영역에 응시하여야 함 (국, 수, 영, 탐구 2과목, 한국사)
정원외	수능위주, 해당 전형	적용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4영역 등급 합이 14 이내